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1-2-02(A)-0
		제정일자	15.08.05
		최근개정	23.09.22
		주관부서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홈페이지공개	공 개

학교법인웅지학원 법인사무국

제1조(적용범위) 본 대학소속의 교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08>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정관 제57조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02.08., 2023.09.22.>

제5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는 간사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 직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관 제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첨부하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검임기관의 장이 검임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09.22.>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 1 항의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09.22.>

제8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2 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통지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단,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징계혐의자의 해외체재, 여행 및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등 기타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케 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의 장은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2.>

제9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3.09.22.>

제10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정관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별지 3 호] 서식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지 3 호] 징계의결서 및 [별지 4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09.22.>

제1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09.22.>

제12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 확정과 동시에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퇴직시킨다.
2. 해임 : 확정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보 후 해임시킨다.
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전문개정 2023.09.22.>

제13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선임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09.22.>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존 제14조는 제13조5항으로 이동]

제14조(징계 양정 기준)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서식에 명시된 징계 양정기준에 의거 징계한다. <신설 2023.09.22.>

제15조(징계의결시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9.22.>

제17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자와 징계처분권자가 다른 때에는 징계처분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처분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체없이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사립학교법 제 5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 2015.08.05.>

이 규정은 201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시행 2023.02.08.>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 2023.09.22.> <시행 2023.10.30.>

이 규정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나. 기 타	파 면 파면 - 해임	해 임 정 직	정직 - 감봉 감 봉	견 책 견 책
2. 복종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감 봉	견 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 -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 해임	해 임	감 봉	감봉 - 견책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8. 영리업무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 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별지 1]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②주민등록 번 호				
		한 자		③직위(급)		④재직기간		
		⑤소 속						
		⑥주 소						
⑦ 징 계 사 유								
⑧ 징계 의결 요구 권자 의 의견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위(급))

인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② 소속		③ 직위(급)	
	④주소					
	⑤ 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⑦출 석 장 소					
※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인)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⑧ 성명		⑨ 소속		⑩ 직위(급)	
	⑪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⑫인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4]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인)

귀하